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

□ 개정 배경

○ 도시가스 요금경감 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이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대상"**으로 **명칭 변경**

□ 개정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적용대상 (2조)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 시행 계획

○ 지침 개정 및 시행 : '16. 3. 18.

<별표 1>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 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 가정, 조손가정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6. 다자녀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별표 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월 >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장애인 (1~3급)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국가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생계/ 의료급여	24,000	16,800	7,200	6,600	4,620	1,980	1,680	1,180	500
주거급여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2,000	8,400	3,600	3,300	2,310	990	840	590	25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대상자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별표 1) 적용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